

# 한-인도네시아 CEPA 실무활용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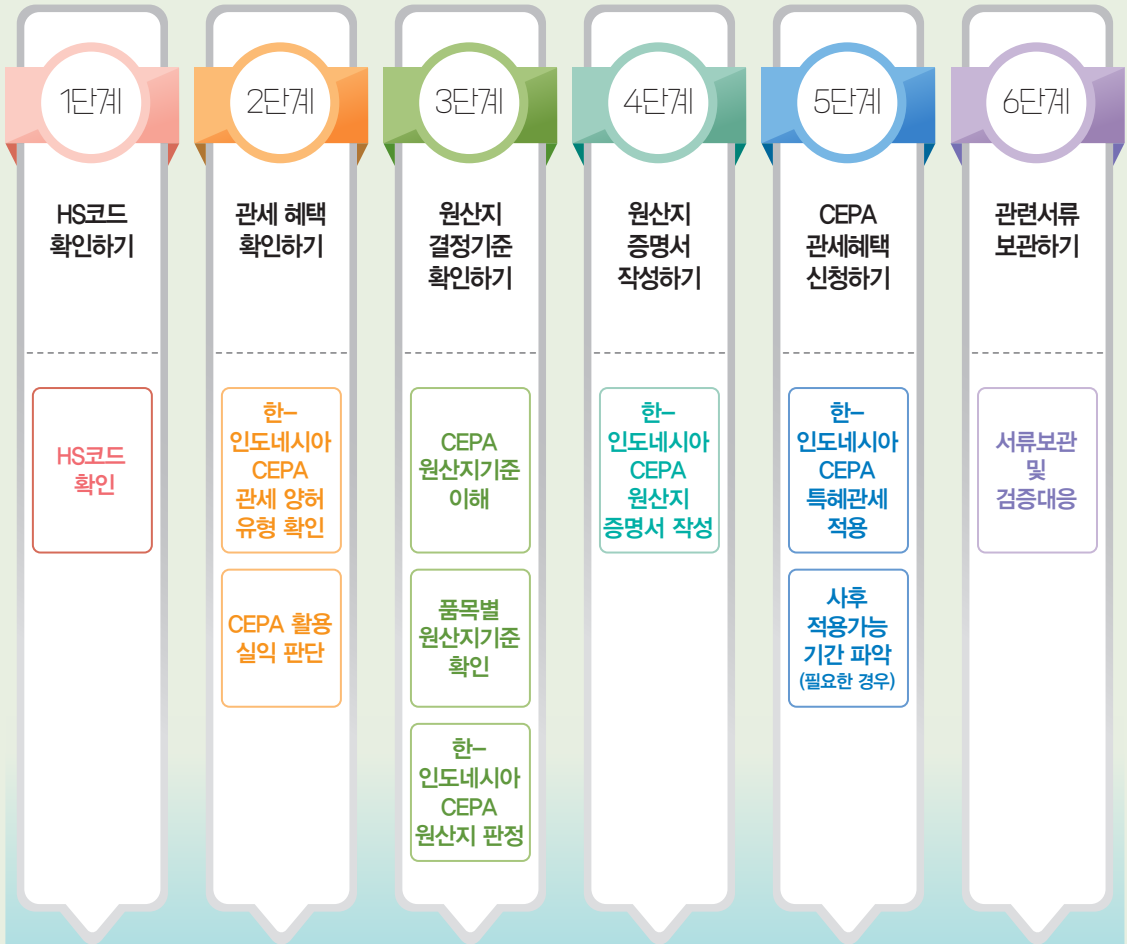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자카르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프로세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용

# Contents

## I

한-인도네시아 CEPA란?

I. 한-인도네시아 CEPA 개요 6

## II

자사가 수입·수출하는 품목의 현재 관세는 몇%이고, CEPA 발효 이후에는 얼마나/언제 관세가 낮아질까?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8

## III

한-인도네시아 CEPA활용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29  
III. 자카르타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 소개



# 수출입업체 |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입업체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OO입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된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FTA 활용지원센터입니다. 우선 CEPA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큰 틀에서 FTA의 개념과 동일하고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기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된 후 우리 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인도네시아 상품의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입업체

기존에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한-아세안 FTA가 있었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에 비하여 양국 간 사정을 고려하여 양허 품목이 증가하였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방식 등에서 자유도가 높아졌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입업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세혜택의 경우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도 있지만, 3년~20년 간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관세혜택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입업체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은 얼마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품목 : 기어 박스, HS CODE 8483.40)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을 확인해보니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기어박스(HS CODE: 8483.40.40)의 기준관세율은 5%이고, 양허유형은 "E0"이기에 해당 품목은 협정 발효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품목별로 기준관세율이 몇 %이고, FTA 발효 이후 몇 년에 걸쳐 관세가 줄어드는지는 협정문의 2장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관심 품목의 관세 인하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게 친절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입업체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기어박스의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품목 : 기어박스, HS CODE 8483.40]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에 따른 세율 혜택은 원산지 상품에만 부여합니다. 여기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원산지 결정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제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각 물품별(HS Cod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483.40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이며,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입업체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한-인도네시아 CEP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 생산자,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부속서 3-SK-1에 규정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과 부속서 3-나-1의 원산지증명서 표준 서식 또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참고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입업체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을 지원받고 싶으신 경우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입업체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FTA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KOTRA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준비과정에서 궁금한게 많을 것 같은데, 또 연락드려도 되죠??

그럼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I. 한-인도네시아 CEPA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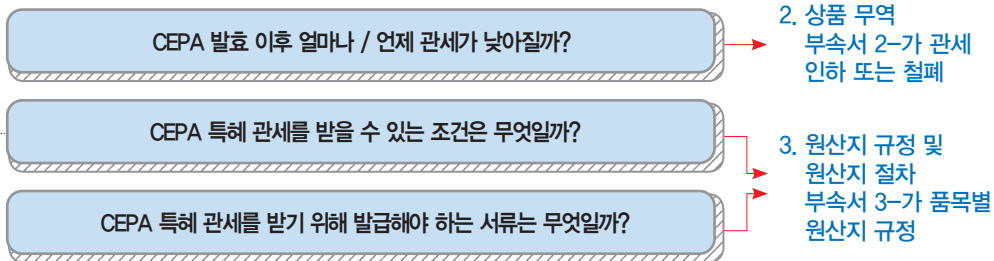
## CEPA란?

CEPA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큰 틀에서 FTA의 개념과 동일하고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기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구성

상품 관련	서비스 투자	협력 총칙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작접근	6. 서비스 무역(금융, 자연인의 이동 등 포함)	1. 일반 규정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7. 투자	8. 경제 협력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9. 투명성
5. 무역구제		10. 분쟁해결
		11. 예외
		12. 제도 규정
		13. 최종 규정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활용법



##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양허

- ▶ 한-인도네시아 CEPA는 한-아세안 FTA상 ①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 및 ②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추가 자유화를 달성
  - (한국) 품목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3.6% ⇒ 품목수 기준 95.5%, 수입액 기준 97.3%
  - (인니) 품목수 기준 80.1%, 수입액 기준 88.5% ⇒ 품목수 기준 93.0%, 수입액 기준 97.0%
-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석유 화학제품, 섬유 등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관세철폐 또는 면세제도를 확보한 바, 큰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
- ▶ 특히, 일부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 했으며, 특히 부품 중 핵심품목들(트랜스미션, 선루프 등)에 대해서는 즉시철폐를 얻은 바, 향후 우리 관련 기업의 對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 자동차(5%, 10-15년철폐), 자동차부품(5%, 즉시-10년철폐)
- ▶ 우리측은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326개 공산품 중 314개에 대해서 시장 개방(모두 10년내 관세철폐)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실질적 추가 개방효과는 제한적임. 다만, 목재류 등 임산물의 경우 對인도네시아 수입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바, 對인도네시아 수입액이 큰 목재류 주요 민감품목 58개에 대해서는 기준세율 유지(1개) 또는 양허제외(57개)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

(자료원)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 STEP 1. HS Code 확인[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

#### (1)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활용

URL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관세율표-부류목록(UI-ULS-0201-002Q)** Home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품명 또는 HS Code로 검색**

관세율표 > **한국** [ 2022년 ] 검색

부	류
0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a href="#">해설서</a>
	02 제2류 육과 식용 설육(膾肉) <a href="#">해설서</a>
	03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 <a href="#">해설서</a>
	04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a href="#">해설서</a>
05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a href="#">해설서</a>	

HS Code	부	류	품명	세율	협정세율
8483.40	10	항공기용	For aircrafts		
8483.40	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Roller screws	3%	C 13% E1 2%
8483.40	1090	기타			C 5% E1 2%
8483.40	90	기타	Other		
8483.40	9010	기어	Gear	8%	C 13% E1 5.6%
8483.40	9020	기어박스	Gear boxes	8%	C 13% E1 5.6%

**클릭 시 상세 세율 확인 가능**

국가	한국	해당년도	2022년
품목번호	<b>8483.40-9020</b>	단위(중량/수량)	KG / U <input type="text" value="단위표기"/>
품명	국문	기어박스	
	영문	Gear boxes	
간이정액환급	110 원 ( 2022-01-01 ~ ) (10,000원당 환급액)		
원산지 <a href="#">원산지</a>	원산지표시대상 ( Y ) [ 적정표시방법 ]		

**세율** 세율적용 우선순위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및 CEPA 협정세율 확인 가능**

구분기호	2022년	관세구분 <a href="#">관세구분</a>
A	8%	기본세율
C	13%	WTO협정세율
E1	5.6%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일반)
R	0%	최빈국특혜관세
U	0%	북한산
FAS1	0% / 0%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 STEP 1. HS CODE 확인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

#### (2) 인도네시아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활용

URL : <https://www.insw.go.id/intr>

KEMENTERIAN KEUANGAN  
LEMBAGA NATIONAL SINGLE WINDOW

Porch Profile INTR Public Information Publication LNSW Application Search Help Center KNFP

Porch > INTR

# Indonesia National Trade Repository

Commodity Detail Search by HS Code or HS Description

물품명 또는 HS CODE 입력 Search for HS code / HS Description

Hai..Noura di sini, ada yang bisa kami bantu?

84834020

-- For marine vehicles

-- For marine vessels

Detail

#### Description of Goods / Description of

##### Language

- **PART XVI**  
MECHANICAL MACHINERY AND EQUIPMENTS ELECTRICAL EQUIPMENT PARTS THEREOF  
VOICE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GOODS
- **CHAPTER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EQUIPMENT; PARTS THEREOF;
- **8483**  
Transmission shaft (including rotating shaft and crankshaft) and crankshaft; bearing housing and plain shaft bearings; gearing and gearing; ball screw or roller screw; gear box and other speed converters, including the converter thorax; force wheels and pulleys, including pulley blocks; coupling and connecting shaft (including universal joints).

##### English

- **SECTION XVI**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 **CHAPTER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 **8483**  
Transmission shafts (including cam shafts and crank shafts) and crankshafts; housings and plain shaft bearings; gears and gearing; ball or roller screw boxes and other speed changers, including torque converters; flywheels and pulleys, including pulley blocks; clutches and shaft couplings (including universal joints).
- **848340**

Hai..Noura di sini, ada yang bisa kami bantu?

### 예시) 기어박스의 HS CODE를 확인하려는 경우

Preferential Rates

적용할 FTA 특혜세율 조회

- **AIFTA (ASEAN India Free Trade Agreement)**  
Regulation PMK 47/PMK.010/2022 jo. PMK 92/PMK.010/2022  
Effective from 2022-04-01
  - Year 2022 : 5.00%
  - \* Rates Apply Onwards
- **AJCEP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egulation PMK 48/PMK.010/2022 jo. PMK 90/PMK.010/2022  
Effective from 2022-04-01
  - Year 2022 : 0.00%
  - \* Rates Apply Onwards
- **IJEPA (Indones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egulation PMK 50/PMK.010/2022  
Effective from 2022-04-01
  - Year 2022 : 0.00%
  - \* Rates Apply Onwards
-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  
Regulation PMK 45/PMK.010/2022

Ha... Noura di sini, ada yang bisa kami bantu?

- \* HS CODE는 품명 외에도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분류해야 함
- \* 따라서 제시한 HS CODE 확인 방법은 참조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HS CODE는 FTA 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함
- \* 한-인도네시아 CEPA는 발효 전이므로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 STEP 2. 관세혜택 확인

#### (1) CEPA 관세혜택이란?

CEPA 관세혜택은 상대국 일반세율과 CEP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CEPA 활용 시 세율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

- MFN 세율 > CEPA 세율 : CEPA 세율 활용 실익 있음
- MFN 세율 ≤ CEPA 세율 : CEPA 세율 활용 실익 없음

#### (2) CEPA 관세혜택 예시

- 수입국의 일반세율 20%, CEPA 협정세율 16%인 경우  
⇒ 4%의 관세혜택 발생
- 수입국의 일반세율 5%, CEPA 협정세율 5%인 경우  
⇒ CEPA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CEPA를 활용하는 경우의 세율이 동일하므로 세율 측면에서 CEPA를 활용할 실익이 없음

#### (3)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 양허 유형

- 한국 관세양허표

양허유형	설 명
E0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완전히 철폐
E3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5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7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7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10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15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20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0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SS	기준관세율을 유지
EX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배제
RED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하게 기준관세율의 25%가 10년 내에 인하

• 인도네시아 관세양허표

양허유형	설 명
E0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완전히 철폐
E3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5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7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7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10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15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20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0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SS	기준관세율을 유지
EX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배제
EX*	특정분야에서 승인된 당사자가 직접 수입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 관세면제

#### (4)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 양허유형 확인 방법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부속서 2-가  
 URL : <https://www.fta.go.kr/main/>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FTA Korea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veral menu items: '우리나라 FTA', 'FTA 활용-대책', '통상정책마당', 'FTA 정보광장', '참여마당', and '기관소개'.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world map titled '우리나라 FTA 현황 한눈에 보기' (Overview of our country's FTA status at a glance). On this map, several countries are marked with icons and labels: '이스라엘' (Israel), '인도네시아' (Indonesia), '대만' (Taiwan), '싱가포르' (Singapore), and '일본' (Japan). The '인도네시아' (Indonesia) label and its corresponding icon are highlighted with a red rectangular box. To the right of the map, there are several informational boxes: '통상' (Trade) with a book icon, '관세율 정보' (Tariff rate information) with a magnifying glass icon, 'FTA 사이버연수원' (FTA Cyber Academy) with a computer icon, and '국민참여마당' (Citizen participation forum) with a speech bubble icon.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buttons for '발효국가' (Effective countries), '서명/타결국가' (Signed/Concluded countries), '협상중국가' (Negotiating countries), and '재개,개시,여건조성' (Restart, start, condition setting).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FTA 강국, KOREA

홈 : 사이트맵 | 글자크기

우리나라 FTA | FTA 활용-대책 | 통상정책마당 | FTA 정보광장 | 참여마당 | 기관소개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우리나라의 FTA**

- FTA 일반
  - FTA의 개념
  - FTA 주요내용
  - 전세계 FTA 체결현황
- 우리나라의 FTA
  - FTA 정책
  - 현황
  - 발효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ASEAN FTA

**한-인도네시아 CEPA**

HOME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서명/타결 > 한-인도네시아 CEPA

일지 | **협정문 및 기본문서** | 국가정보 | 언론동향 | 참고자료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

> 협정문 상세보기

제목	KOREAN	ENGLISH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협정문 상세보기

제목	KOREAN	ENGLISH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예1) 한국에서 인니로 차량용 기어박스를 수출하는 경우 (HS 8483.40)

	8483.4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외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8235	8483.40.20	-- 선박용	0%	E0
8236	8483.40.30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0%	E0
8237	8483.40.40	-- 제 87 류의 차량용	0%	E0
8238	8483.40.90	-- 기타	0%	E0

기준세율 5%, 양허유형 0  
 ⇒ 협정의 발효일에 무관세가 적용되므로,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즉시 철폐되는 효과가 있음

예2) 인니에서 한국으로 차량용 기어박스를 수출하는 경우(HS 8483.40)

8483401090	기타	0.0%	E0
8483409010	기어	0.0%	E0
8483409020	기어박스	0.0%	E0
8483409030	무단변속기	0.0%	E0
8483409041	제 87 류 차량용	0.0%	E0
8483409049	기타	0.0%	E0
8483409090	기타	0.0%	E0

기준세율 8%, 양허유형 0  
 ⇒ 협정의 발효일에 무관세가 적용되므로,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즉시 철폐되는 효과가 있음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 STEP 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1) 원산지 기준의 개념

원산지기준		의미	비고	
일반 기준	기본 원칙	완전생산기준	당사국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불완전한 생산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역내가공원칙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제3.2조 원산지 기준 제2항
		충분가공원칙	단순, 경미한 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 미인정	예) 포장변경, 세탁, 단순절단, 단순한 시험
		직접운송원칙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의 영역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면 원산지 미인정	제3.9조 직접운송
	주요 분야별 특례 기준	누적기준	다만,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 통제 하에 있고,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역 및 재선적이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	제3.6조 누적
		미소기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	제3.10조 최소허용수준
실질적 변형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 : PSR)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이 그 상품의 본선인도 가격(FOB)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예) CC, CTH, CTSH	
	부가가치기준	완제품과 투입한 역외 원재료간 HS CODE 변경여부로 원산지 결정	예) RVC/QVC40	
	선택기준	상기 실질적 변형기준의 선택형으로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원산지 인정	예) CTH or RVC 40%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경우, 품목별(HS CODE)별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고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제조, 가공국을 완제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CEPA 체결국가간 수출입 물품은 무조건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X)  
☞ CEPA 관세혜택은 조건부로, 협정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이 충족한 물품에 한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모두 한국산이다. (X)  
☞ 협정에서 규정한 역내산(원산지) 인정조건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한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2) 한-인도네시아 CEP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한-인니 CEPA 협정문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URL :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id/1/>

> 협정문 상세보기

제목	KOREAN	ENGLISH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예)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킷(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 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 STEP 4. 원산지 판정

#### (1) 원산지 판정 사례(세번변경기준)

**Q** 한국 소재 중소기업이 중국 고무를 수입하여 타이어를 만들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한국 소재/인도네시아 수출

1. 원재료 : 중국 수입 → 완전생산기준 충족 안됨
2. 타이어 생산 : 실질적 변경여부 확인 → 타이어(최종재)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 ① HS CODE : 4011.10
  - ② CTH or RVC 40%

#### ▷ 최종재와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HS CODE) 비교

구분	류	호	소호
(최종재)	40	11	10
(원재료)	40	2	99
	(2단위)	(4단위)	(6단위)
	CC	CTH	CTSH

- ☞ 위의 도표 상 원재료와 최종재의 세번 앞자리 4자리가 상이하므로 원산지 충족
- ☞ 다만, 역외산 원재료 중에 세번 앞자리 4자리에 '4011'가 있으면 원산지 불충족

(2) 원산지 판정 사례(부가가치기준)

**Q** 한국 소재 중소기업이 자동차 배기관을 만들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한국 소재/인도네시아 수출

1. 자동차 배기관 생산 : 실질적 변경여부 확인 → 자동차 배기관(최종재)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 ① HS CODE : 8708.92
  - ② CTH or RVC 40%

2.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 ▷ 자동차 배기관 조정가치(AV) : 600원
- ▷ 최종재에 대한 BOM

자재명	세번부호	원재료가격	원산지
A	7218.1	150	한국
B	4002.19	120	중국
C	7219.11	30	한국
D	7221	50	한국

RVC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RVC법으로 계산한 값이 40% 이상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 가치}}{\text{상품가치(AV)}} \times 100 = \frac{480}{600} \times 100 = 80\%$$

(3) 원산지 증빙서류

- 개념 :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 등
- 종류 :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조공정도, 기타 원산지입증서류 등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원산지명서

(4쪽 중 제1쪽)

※ 작성방법을 읽고 직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수출자·생산자				
1. 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2.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4. 품목번호(HS No.)	
5. 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가격(EXW) [ ]	6. 원산지결정기준	
		본산인도가격(FOB) [ ]		
	금 액		7. 자유무역협정명칭	
8. 주요생산 공 정				
원산지명세서				
9. 연번	10. 재료명	11. 품목번호 (HS No.)	12. 원산지	13. 가 격 수 량      가 격
				14. 공급자 (생산자)
15. 합 계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원천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부가가치비율 : %)	
19.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20. 결합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21. 특정공정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22.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	아니오 [ ]	23.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
				아니오 [ ]
24.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	아니오 [ ]	25. 기 타	예 [ ]
				아니오 [ ]

210mm×297mm[백상지(80g/㎡)]

- 2022년 07월 개정으로  
신서식 사용

(4쪽 중 제2쪽)

###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26. 수출 대상국 (Export Destination)	27. 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RCEP Appendix of Annex I)	28.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Domestic Value Addition)	29.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30. RCEP 원산지 국가 (RCEP Country of Origin)
			수행(Y)	미수행(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〇〇세관장(〇〇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80g/㎡)]



**STEP 5. 원산지증명서 작성**

**(1) CEPA 원산지증명서의 개념**

수출, 수입 거래 시 CEPA의 적용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

- 특정물품이 한국에서 수출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Non-preferential C/O)와는 상이

**(2) 작성방식**

항 목	내 용
발급방식	• 기관발급 ⇒ 자율발급 순차적 도입
양식	• 한-인니 CEPA 협정문 제3장 부속서 3-나-1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전자 원산지 증명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이용) • 전자 원산지 증명서(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이용)
발급자	•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발효 후 2년 이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발효 후 10년 이내) • 기관발급 : 한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발급형식	•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매체
작성언어	• 영어
유효기간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 원산지 증명서 서식

**부속서 3-나-1**  
**원산지 증명서**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참조번호: <b>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서</b>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비용)  서식 KI-CEPA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			
2.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3.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적항:  하역항:		4. 비고:			
5. 품목 번호	6. 상품명(포장의 수량 및 종류 그리고 번호를 포함합니다)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8. 원산지 기준	9. 중중량 또는 그 밖의 처수 및 본선인도가격(FOB) 가치(RVC/QVC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0. 송장 번호 및 날짜
11.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 (장소 및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		

### (3) 협정세율 적용

- 원칙 -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특혜관세 신청
- 예외 -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된 날 후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특혜관세 신청 가능

### (4)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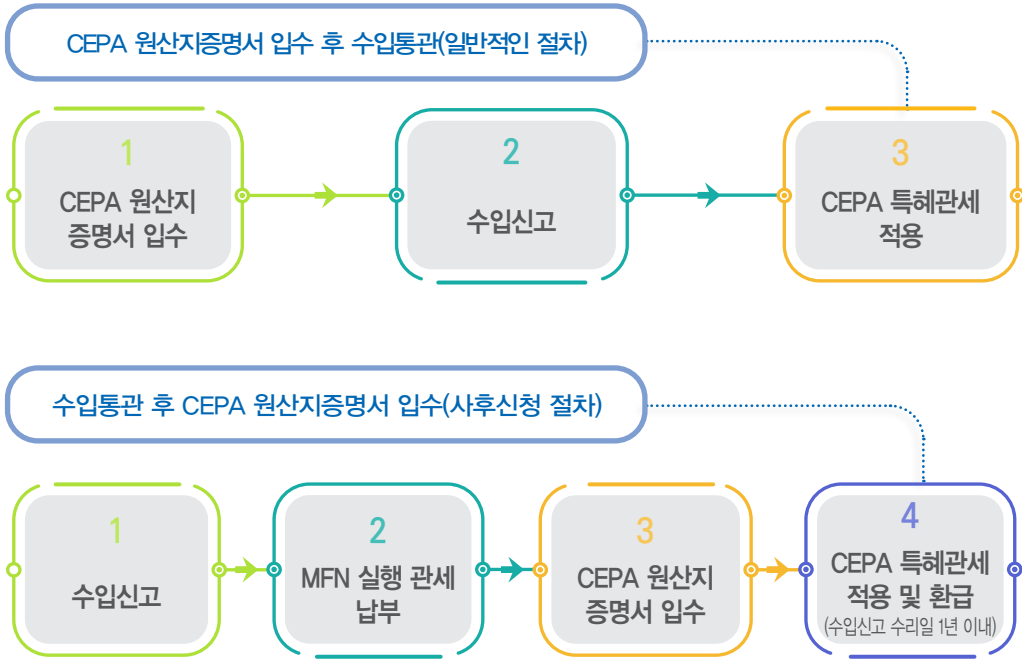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관세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품 수입의 경우
  -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200달러
  -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 수입의 경우

\* 다만, 수입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않아야 함.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 STEP 6. CEPA 관세혜택 신청 절차



- ▶ 한-인니 CEPA 협정문 제3.18조에 따른 특혜관세 부여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서면 진술서를 세관신고 시 작성
  - ②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적시
  - ③ ①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3.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원산지 증명을 소지할 것
  - ④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공할 것, 그리고 수입자가 ①의 신고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수입서류를 정정하고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 ▶ 한국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 신청 가능하며, 납부한 MFN 실행 관세와 FTA 특혜관세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STEP 7. 관련서류 보관

CEPA 협정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함.

- 한-인니 CEPA 협정문 제3.22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최소 3년간 원산지상품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
-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간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당국이 상품의 수입에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는 문서 유지.

수입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련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생산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서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수출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사본(전자서류 포함)
- 수출신고필증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최소 3년간 보관**

자료 : FTA 특례법 시행령 10조

## II.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 STEP 8. 원산지 검증

#### (1) 원산지 검증의 개념

특혜 적용 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

#### (2)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검증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검증[정보 요청, 검증 방문]</li> <li>• 간접검증[수출당사국 관세행정기관에 검증 지원 요청]</li> </ul>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검증(수입 당사국), 간접검증(수출 당사국)</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검증 요청이 있는 날 또는 최초 검증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개월의 기간 내</li> </ul>
회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요청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 기관, 관세당국</li> <li>• 검증방문 - 수출자 또는 생산자</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요청 : 서면 요청일로부터 30일</li> <li>• 검증방문 :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제공</li> </ul>

#### (3) 원산지 검증 주요 항목

항목	예시
품목분류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는지 등
원산지 결정기준	수출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등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
협정관세 적용신청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는지 등
직접운송원칙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었는지 여부 등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등

# III. KOTRA 자카르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한-인니 CEPA, 어디까지 활용하고 계십니까?

복잡한 내용 때문에 FTA활용이 어려우시다고요?

KOTRA와 함께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협정문 내용부터 마케팅 상담까지 한-인니 CEPA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 주요기능



### 이용방법

KOTRA 본사 콜센터 : 1600-7119 / 통상협력팀: 02-3460-7515

자카르타 센터 이메일 : smilewater@kotra.or.kr / 전화번호: 62-21-574-152-116

#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한-인도네시아 CEPA 실무활용 가이드

발행인 | 유정열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2년 12월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ISBN | 979-11-402-0446-5 (93320)  
979-11-402-0447-2 (95320)(PDF)

| Copyright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